

4.4.15 산학협력단 소속의 센터 및 사업단 설립 등 운영에 관한 규정

제정 2017. 09. 14.

개정 2018. 08. 0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센터 및 사업단 설립 등 운영에 관한 공통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원·관리하는 센터 및 사업단에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센터"라 함은 정부, 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으로부터 대학소속 교원이 사업비를 지원받아 특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센터 및 사업단(이하 "센터"라 한다)을 말한다.
2. "센터장"이라 함은 대학 소속 교원으로서 지원기관의 수행사업에 참여하는 센터로 선정된 후 총장으로부터 당해 사업의 책임자로 임명받은 자를 말한다.

제4조(센터의 설립) ① 센터의 설립요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다.

1. 중앙부처로부터 특별 국책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하는 경우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2. 교내의 학과 또는 기존 연구소 단위로 수행할 수 없는 대형외부 연구사업비를 수행하는 경우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센터의 설립은 설립·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센터는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을 위한 내부 운영규정을 둔다.

제5조(센터의 장) ① 센터에는 장을 두며, 본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지원기관이 정한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.

제6조(연구원 등) ① 센터에는 연구원, 연구보조원,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필요시 외부 연구원을 센터 사업의 공동 책임 연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③ 센터 소속 직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조직) 센터에 부, 실 등 필요한 내부조직을 둘 수 있다.

제9조(예산의 편성과 운용) ①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센터 자체 재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·운영한다.

② 센터사업비는 「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」에 의하여 대학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입되는 등 그

적용을 받는다.

- 제10조(회계관리) ① 정부, 공공기관 또는 관련기업 등으로부터 센터에 지원되는 자금은 산학협력단이 관리한다. 다만 원활한 사업수행과 지원기관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센터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센터의 운영과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제경비의 집행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집행한다.
- ③ 센터사업비의 간접경비 징수는 초당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에 의한다. 단,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 등이 있는 경우는 해당 지침에 따른다.
- ④ 산학협력단은 적법한 회계 및 행정관리를 위하여 센터 및 사업단에 지도 및 조언을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총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 또한 감사결과에 의거 징계 및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 센터 또는 사업단은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08.02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.